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장

제 44 호                      2015. 4.30(목)

## 고 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1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9

남원시 고시 제2015 - 22호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남 원 시 장  
2015년 4월 30일

##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현황

저수지명	위치	규모				관리자	비고
		수해면적 (ha)	총저수량 (천톤)	제당길이 (m)	제당높이 (m)		
방평제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산69-7번지 일원	8.0	11.8	80	6.0	남원시장 (농정과)	
숲몰제	전북 남원시 운봉읍 권포리 29번지 일원	7.2	7.6	116	3.3	남원시장 (농정과)	
내기제	전북 남원시 이백면 강기리 119번지 일원	9.0	9.9	44	9.3	남원시장 (농정과)	

2. 지정사유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재해위험 지역으로 선정되어 재해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위험저수지로 지정·고시하고 관리하기 위함.

## 3. 저수지 관리자

가. 명칭 : 전라북도 남원시(농정과)

나. 주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 4.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5.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4. 5.

6. 문의처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3), 농정과(063-620-6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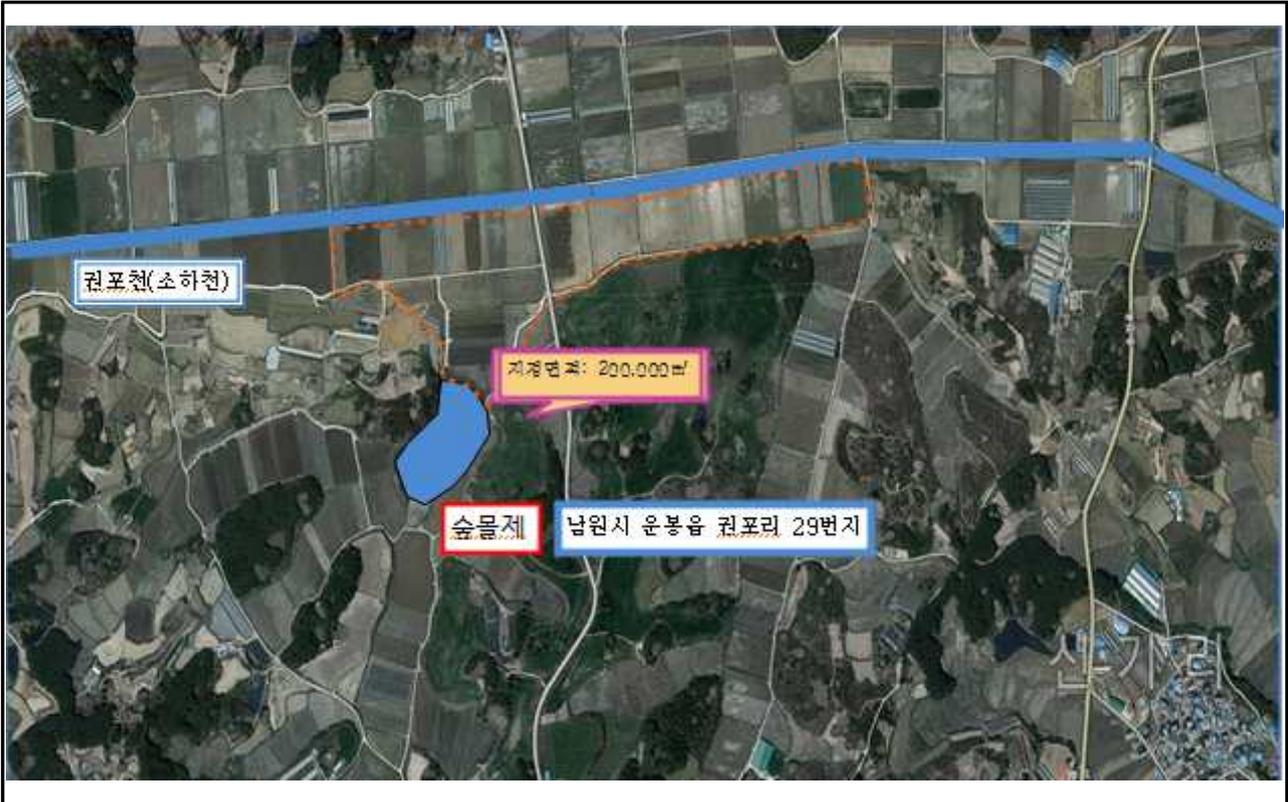
붙임 자연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도면 : 1부(따로붙임)

## 자연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도면

□ 위치도 및 지형도(방평제)



□ 위치도 및 지형도(숲물제)



## □ 위치도 및 지형도(내기제)

